

# 서울시산림조합정관 일부개정 공고

## 1. 개정이유

- 「산림조합법」이 개정(법률 제17096호, 시행일 2020. 9. 25.)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여 상임이사 및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, 조합원 가입 최소 출자계좌 수를 20계좌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정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- 「산림조합법」[법률 제18024호, 2021. 4.13.]의 개정으로 산림소유자의 조합원 가입기준이 되는 최소 산림면적이 300제곱미터부터 1천제곱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신설됨에 따라, 새롭게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산림소유자의 최소 소유 산림면적에 관한 사항을 정관(예)에 반영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- 조합원 최소 출자계좌 수 상향 및 상임이사와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임기 변경
  - 가. 조합원의 최소 출자계좌 수를 1계좌(5천원)에서 20계좌(10만원)로 상향함(제23조제2항)
  - 나. 조합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임이사와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함(제63조)
  - 다. 해산, 분할, 합병 및 총회 외에서 직접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함(제51조제1항)
  - 라. 산림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중 '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'을 삭제함(제64조제1항제8호 삭제)
  - 마. 전문용어, 한자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함(안 제1조, 제5조, 제15조, 제23조, 제25조, 제26조, 제34조 및 제65조)

○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최소산림 소유면적 규정.

가.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산주의 최소 산림 소유 면적을 300제곱미터부터 1천제곱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조합별 여건에 맞게 정하도록 함.

(제13조제3항 신설)

나. 우리조합의 구역인 서울특별시는 산림면적이 비교적 협소하여 300제곱미터로 정함.

# 서울시산림조합정관 일부개정정관

서울시산림조합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합원이 필요로 하는” 을 “조합원에게 필요한” 으로 한다.

제1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산림소유자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자로 한다.

## <지역조합의 사업>

제5조제1항제2호차목 중 “공작물” 을 “인공구조물” 로 한다.

## <전문조합의 사업>

제5조제1항제1호나목 중 “조합원이 필요로 하는” 을 “조합원에게 필요한” 으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중 “육묘장” 을 “양묘장” 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제3호 중 “출자좌수” 를 “출자계좌 수” 로 한다.

제23조제1항 중 “1좌” 를 “1계좌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1좌” 를 “20계좌” 로 “100좌” 를 “100계좌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1만좌” 를 “1만계좌” 로 “출자좌수” 를 “출자계좌 수” 로 한다.

제25조제2항제3호 중 “출자좌수” 를 “출자계좌 수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1좌” 를 “1계좌” 로 한다.

제26조제1항 단서 중 “출자좌수” 를 “출자계좌 수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1좌” 를 “1계좌” 로 한다.

제26조의2제2항 중 “1좌” 를 “1계좌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좌수” 를 “계좌 수” 로 한다.

제34조제1항 중 “1좌” 를 “1계좌” 로, “출자좌수” 를 “출자계좌 수” 로 한다.

제5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조합은 제44조의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. 다만, 조합장 선거를 조합원총회 또는 총회외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조합장 선출방식에 대한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없다.

제63조제1항 본문 중 “4년으로 하고” 를 “다음 각 호와 같고” 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: 4년

2. 상임이사 및 조합원이 아닌 이사: 2년

③ 보궐선거 및 재선거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이사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에 따라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새로이 기산한다.

제64조제1항제5의2호 중 “범한” 을 “저지른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9호 중 “범하여” 를 “저질러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11호 본문 중 “50좌” 를 “50계좌” 로, “200좌” 를 “200계좌” 로 한다.

제65조제5항 중 “보선” 을 “보궐선거” 로 한다.

제67조제2항 중 “대하여는” 을 “대해서는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조합원 자격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제13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는 이 정관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
<p>&lt;지역조합의 경우&gt; 제13조(조합원의 자격 등) ① 및 ② (생 략)  ③ &lt;신 설&gt;</p>	<p>&lt;지역조합의 경우&gt; 제13조(조합원의 자격 등) ① 및 ② (현행과 같음)  ③ 제1항에 따른 산림소유자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자로 한다.</p>
<p>제1조(목적) 본조합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,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조합원에게 필요한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&lt;지역조합의 사업&gt; 제5조(사업) ① 본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. 1. (생 략) 2. 경제사업 가. ~ 자. (생 략) 차. 임산물을 소재로 하는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 및</p>	<p>&lt;지역조합의 사업&gt; 제5조(사업) ①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가. ~ 자. (현행과 같음) 차. ----- -----인공구조물-----</p>

현 행	개 정(안)
<p>판매  카. ~ 하. (생략)  3. ~ 12. (생략)  ② ~ ⑦ (생략)</p> <p>&lt;전문조합의 사업&gt;  제5조(사업) ① 본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.  1. 생산경영을 위한 기술지도  가. (생략)  나.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다. 신제품의 개발, 보급 및 기술 확산 등을 위한 시범포, <u>육묘장</u>, 연구소의 운영  라. (생략)  2. ~ 8. (생략)  ② ~ ⑦ (생략)</p> <p>제15조(조합원의 가입) ① 본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를 본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.  1. 및 2. (생략)  3. 인수하고자 하는 <u>출자좌수</u>  4. 및 5. (생략)  ② ~ ⑤ (생략)</p>	<p>카. ~ 하. (현행과 같음)  3. ~ 12. (현행과 같음)  ②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전문조합의 사업&gt;  제5조(사업) ① -----  -----  -----.  1. -----  가. (현행과 같음)  나. <u>조합원에게 필요한</u> -----  -----  다. -----  ----- <u>양묘장</u> --  -----  라. (현행과 같음)  2. ~ 8. (현행과 같음)  ②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5조(조합원의 가입) ① -----  -----  -----  -----.  1. 및 2. (현행과 같음)  3. ----- <u>출자계좌 수</u>  4. 및 5. (현행과 같음)  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(안)
<p>제23조(출자) ① 출자 1좌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.</p> <p>② 조합원은 1좌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3조제1항의 법인조합원은 100좌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.</p> <p>③ 1명의 출자는 1만좌를 초과하지 못한다. 다만, 조합 총출자좌수의 100분의10 이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23조(출자) ① ----- 1계좌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20계좌 ----- ----- -----100계좌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1만계좌 ----- -----출자계좌 수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5조(출자증권의 발급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조합장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및 2. (생략)</li> <li>3. 출자금액과 출자좌수</li> <li>4. 출자 1좌의 금액</li> <li>5. 및 6. (생략)</li> </ol>	<p>제25조(출자증권의 발급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및 2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3. ----- 출자계좌 수</li> <li>4. ----- 1계좌 -----</li> <li>5. 및 6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
<p>제26조(회전출자) ① 본조합의 조합원은 제78조에 따라 배당되는 매회계연도의 잉여금의 전액을 회전출자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3조에 따른 출자좌수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분과 총회에서 회전출자외의 방법으로 배당하도록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26조(회전출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출자계좌 수 ----- ----- -----.</p>

현 행	개 정(안)
<p>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③ <u>1좌</u> 이상의 회전출자금은 납입 출자금으로 적립한다.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1계좌</u> ----- -----.</p>
<p>제26조의2(우선출자) 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<u>1좌</u>의 금액은 5,000원으로 한다.</p> <p>③ ~ ⑤ (생 략)</p> <p>⑥ 본 조합은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발행한 우선출자 총 <u>좌수</u>의 과반수가 출석한 우선출자자 총회에서 출석한 출자좌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⑦ ~ ⑨ (생 략)</p>	<p>제26조의2(우선출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1계좌</u> ----- -----.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 ----- <u>계좌</u> <u>수</u> ----- -----.</p> <p>⑦ ~ ⑨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4조(출자감소의 의결) ① 본조합이 총회에서 출자 <u>1좌</u>의 금액 또는 출자<u>좌수</u>의 감소(이하 “출자감소”라 한다)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결이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및 ③ (생 략)</p>	<p>제34조(출자감소의 의결) ① ----- ----- <u>1계좌</u> ----- 출 <u>자계좌 수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및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1조(대의원회) ① 본조합에 총회에 같은 대의원회를 둔다. 다만,</p>	<p>제51조(대의원회) ① 조합은 제44조의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</p>

현 행	개 정(안)
<p><u>조합장 선거를 조합원총회 또는 총회외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조합장 선출방식에 대한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없다.</u></p> <p>② 및 ③ (생략)</p>	<p><u>항에 대해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. 다만, 조합장 선거를 조합원총회 또는 총회외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조합장 선출방식에 대한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없다.</u></p> <p>② 및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3조(임원의 임기) ① <u>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,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설립 당시의 조합장,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, 2년을 초과할 수 없다.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 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u>보궐선거 및 재선거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당선일 결정된 때부터 새로 기산한다. 다만,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>④ 및 ⑤ (생략)</p>	<p>제63조(임원의 임기) ① ----- ----- <u>다음 각 호와 같고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&lt;단서삭제&gt;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: 4년</u></li> <li>2. <u>상임이사 및 조합원이 아닌 이사: 2년</u></li> </ol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보궐선거 및 재선거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이사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에 따라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당선일 결정된 때부터 새로이 기산한다.</u></p> <p>④ 및 ⑤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(안)
<p>제64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다만,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5의2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p> <p>6. 및 7. (생략)</p> <p>8. <u>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</u></p> <p>9. 법 제132조 또는 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」 제58조(매수 및 이해유도죄)·제59조(기부행위의 금지·제한 등 위반죄)·제61조(허위사실 공표죄)부터 제66조(각종 제한규정 위반죄)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p> <p>10. (생략)</p> <p>11. 선거일공고일 현재 본조합에 대하여 <u>50좌</u>(조합장의 경우에는 <u>200좌</u>) 이상의 납입출자(이하 “기준출</p>	<p>제64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5의2. ----- ----- ----- <u>저지른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6. 및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9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저질러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11. ----- ----- <u>50계좌</u>----- <u>200계</u></p>



현행	개정(안)
<p>제5조(사업) ① 본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.</p> <p>1. ~ 11. (생략)</p> <p>12.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<u>시·도지사의 승인</u>을 받은 사업</p> <p>② ~ ⑦ (생략)</p>	<p>제5조(사업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2. ----- ----- <u>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</u> - -----</p> <p>② ~ ⑦ (현행과 같음)</p>